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 1.농업법인의 사업범위(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부대사업의 요건 설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작 성 자	이름	김승동
	담당부서 (과)	청년농육성정책팀		직급	서기관
	국장	윤원습		연락처	044-201-1537
	과장	조민경		이 메 일	k702@mail.go.kr

2025. 05. 15.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농업법인의 사업범위(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부대사업의 요건 설정)		
	2.규제조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2호아목		
	3.위임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제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06.19~2025.07.2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그 동안 농업법인 제도의 취지*와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수익은 불허하고, 자체 전력사용(자가용)에 한정하여 인정 *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제고, 농업이나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에 관한 기업적 운영 등 ** 농업법인 불필요한 건축물을 짓고 이를 활용한 임대업 수단으로 활용(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 점검, '21.9~'22.8)하거나 비농업인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악용 - 다만, 현장에서는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한 잉여전력 거래 허용(부수입 창출)을 지속 건의(국민신문고, 민원전화 등) - 자체 전력사용을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후 일조량에 따라 전력이 과하게 생산될 경우 잉여전력을 폐기하는 상황도 발생 ○ 이에 따라, 현장의견을 수용하여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를 허용하되, 농업법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태양광 발전사업 허용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해 규제 설정		
	7.규제내용	○ 태양광 발전설비는 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등 유휴공간에 설치 ○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도 잉여전력 판매가 가능(자가용 PPA)하도록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라 발전용량도 1천kw 이하로 하고, ○ 유사 입법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참고하여 전력 매출액은 농업법인 총매출액의 30% 이하로 설정 ○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태양광 발전 수익은 다른 회계와 구분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실질적으로 운영중인 농업법인 및 신규 설립 농업법인 ○ 기초지방자치단체(농업법인 신고 접수, 실태조사 등의 사무 수행)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td><td>○ 실질적으로 운영중인 농업법인(2022년 기준 26,104개) 및 신규 설립 농업법인(22년 : 452개)</td></tr><tr><td>관련기관</td><td>기초지방자치단체(시, 군, 자치구)</td><td>○ 기초자치단체 226개 기관(2024 행정안전통계연보)</td></tr><tr><td>이해관계자</td><td>태양광 발전설비 시공업체 등</td><td>○ 2023년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업 252개, 건설업 2,109개 등 * 출처 : 신재생에너지 산업실태조사(한국에너지공단)</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실질적으로 운영중인 농업법인(2022년 기준 26,104개) 및 신규 설립 농업법인(22년 : 452개)	관련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시, 군, 자치구)	○ 기초자치단체 226개 기관(2024 행정안전통계연보)	이해관계자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업체 등	○ 2023년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업 252개, 건설업 2,109개 등 * 출처 : 신재생에너지 산업실태조사(한국에너지공단)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실질적으로 운영중인 농업법인(2022년 기준 26,104개) 및 신규 설립 농업법인(22년 : 452개)																		
관련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시, 군, 자치구)	○ 기초자치단체 226개 기관(2024 행정안전통계연보)																		
이해관계자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업체 등	○ 2023년 태양광 발전설비 제조업 252개, 건설업 2,109개 등 * 출처 : 신재생에너지 산업실태조사(한국에너지공단)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제도도입을 통하여 태양광 발전을 통한 잉여전력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농업법인의 수익성 높일 수 있어 농업법인의 안정적 운영 가능 ○ 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옥상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에 기여 ○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용량 및 매출액 비중을 설정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농업법인 제도의 취지도 유지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table><tr><td></td><td>비용</td><td>편익</td><td>순비용</td></tr><tr><td>피규제자</td><td></td><td></td><td></td></tr><tr><td>피규제자 이외</td><td></td><td></td><td></td></tr><tr><td>정성분석</td><td></td><td></td><td></td></tr></table>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 (비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따른 설치비가 비용으로 발생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제한에 따른 수입 감소, 태양광 매출액 제한 등에 따라 농업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하여 기회비용은 일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농업법인이 설치·운영 중인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 등에 관한 자료가 없어 정량적 분석에 어려움이 있음.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한국에너지공단) 발급 현황 등을 활용한 비용·편익분석을 검토하였으나 자료 미비로 분석 곤란 - (편익1) 잉여전력 판매로 인해 태양광 판매 수익 증대에 따른 편익이 발생할 수 있음. 하지만, 태양광 발전설비 효율은 날씨 등 환경적 요인과 설비의 성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태양광 발전 용량별 수익에 관한 정부통계자료 미확보로 인해 정량적 분석에 어려움이 있음. - (편익2)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발전을 허용함에 따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 정책기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농업법인 정관례 제3조 또는 제4조(사업)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0조의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u>농업의 경영</u>	1. <u>다음 각 목의 주사업</u>
<신 설>	가. ~ 마. (현행 제1호에서 제5호)
<신 설>	바. (생 략)
<신 설>	사. (생 략)
	아. (생 략)
2. ~ 5. (생 략)	2. ~ 5. (삭 제)
6. <u>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u>	2. <u>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u>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생 략)
<신 설>	아. <u>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잉여전력의 거래(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등 유휴공간에 설치된 「전기사업법」에 따른 1천kw 이하의 자가용, 일반용 발전설비로써 전력 매출액은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며,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u>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② (생 략)	<u>회계는 농업법인의 다른 회계와</u> <u>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u> <u>자. (생 략)</u> <u>차. (생 략)</u> <u>카. (생 략)</u> ② (현행과 같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따른 사업만 영위 가능

법령명	조문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다.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마.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바.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② (생략)

- **현행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는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가공·유통 등의 주사업과 부대사업(영농자재 생산·공급 등)에 한정***
 - * 그 동안 농업법인 제도의 취지와 부작용 등을 감안하여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 수익 사업은 불허(자가 소비용 발전만 인정)
- 농업법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농지 취득도 허용
- ☐ **현장에서는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한 잉여전력 거래 허용(부수입 창출)을 지속 건의(국민신문고, 전화 등)하였으며,**
 - 자체 소비를 위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후 일조량에 따라 전력이 많이 생산되는 경우 잉여전력을 폐기하는 상황도 발생
 - 최근 용역결과(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분석, '25년)에서도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의 제한적 허용*을 권고

* 농지법 위반 소지 제거, 전력수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발전용량(1Mw) 적용 등

<참고>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사례

Q)농업회사법인의 버섯재배사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가요? ⇒ ('25.2.4. 답변요지) 불가하며, 태양광 발전사업 시 해산명령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

□ 정부에서는 현장의견 등을 수용하여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를 허용하기로 결정('24.12., 농업·농촌 혁신 전략)

○ 다만, 농업법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제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부대조건** 명시

* 농업법인이 불필요한 건축물을 짓고 이를 활용한 임대업 수단으로 활용(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 점검, '21.9~'22.8)하거나, 비농업인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이용

** 발전용량 1천kw 이하, 전력 매출한도 설정(총매출액의 30% 이하), 회계의 구분 등

□ 정부개입 필요성

○ 농업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호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회계 투명성과 정책 목표 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장소 제한(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등) 외에 부대조건 추가
	내용	부대조건으로 전력 매출액(법인 총매출액의 30% 이하) 및 발전용량 상한 설정(1,000kw 이하), 전력 매출액의 회계구분
규제대안2	대안명	농업법인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장소만 제한
	내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등 유희부지에 한정하여 설치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태양광 발전 매출액 상한(농업법인 총매출액의 30% 이하), 발전용량 1,000kw* 제한 등을 통해 농업경영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농업법인 제도의 취지 유지 *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잉여전력 판매 가능 태양광 발전수익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준수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건축물 지붕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함으로써, 농지 훼손 없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토지 이용 효율성 향상	일부에서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 사업 전면 허용, 태양광 발전 목적인 경우 비농업인의 농업법인 소유의 유휴부지 임대 허용 요구 가능성도 존재 이 경우 헌법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 농업인의 공동경영 등 농업법인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거나 제도 악용 소지 존재 태양광 발전 수익은 날씨, 전력시장 가격, 설비 성능 등에 따라 변동되므로, 매출 비율(30%)을 지속적으로 관리·예측하기 어려움.
규제대안2	- 농지법 위반 소지 사전 차단 -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건축물 지붕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함으로써, 농지 훼손 없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토지 이용 효율성 향상	농업법인이 불필요한 건축물 등을 짓고 이를 활용한 임대업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업법인의 주된 목적이 농업경영이 아닌 태양광 발전수익으로 변질될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농업법인 대표자	민생토론회('24.7.18. 전북 정읍)에서 농업법인 대표자는 제도개선 사항 건의	외부투자 확대가 가능하도록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업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	수용
농업법인 관계자 (대표이사, 임원 등)	국민신문고 민원, 전화, 업계 대표 면담* 등(수시) * 사례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세제특위('25.5.13)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 허용 건의	수용

관계 부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농업·농촌 혁신 전략" 마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주요내용* 발표 * 농어법인의 사업범위 확대	자가 생산한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농업법인 총 매출액의 30% 이하)	수용
관련 연구용역	농업법인 사업범위 분석('25년, 연구용역)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는 허용하되, 발전설비 설치 장소, 발전용량 등에 제한 필요	수용
중앙행정기관 등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25.4.15.~ 4.28.)	의견없음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농업법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 사업 허용에 따른 부작용 예방이 가능하고, 정책 목적 달성하는데 적절함으로 규제대안 1로 선택

3. 규제목표

- 현장 및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농업법인의 수익성 제고 및 안정적 사업영위 지원
- 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에도 기여
-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를 허용함에 있어 관련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예상되는 문제점 예방을 규제목표로 설정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를 허용함에 있어 관련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
- 이를 위해, 유사입법례 등을 준용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용)로 설정
 -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혜택의 악용, 농업법인 제도의 취지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는 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등 유휴공간에 설치하도록 하고,
 - 유사 입법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참고하여 전력매출액은 농업법인 총매출액의 30%를 넘지 않도록 규정

법령명	조문내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입장권 3. 자산가치가 높은 고가의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4.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도 잉여전력 판매가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라 발전용량도 1,000kw 이하로 설정

법령명	조문내용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역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법령명	조문내용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 5.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⑤ ~ ⑦ (생략)

- 농업법인 실태조사 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준수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전 수익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도록 규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그 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사업을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기술규제와의 관련성은 없음

- 경쟁영향평가

- 본 규정은 농업법인을 이미 설립·운영하는 자와 신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사업자간 차별성이 없음(경쟁에 의한 영향은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2022년도 결산 농업법인 25,119개소 중 전체의 95.4%(23,966개)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출처 : 2022년도 농업법인 조사 보고서)으로 조사
- * (참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며, 농업, 식료품 제조업 등은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인 경우
- 따라서, 동 규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중기영향평가 대상이나,
 - 대부분 중소기업인 농업법인의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를 신규 허용하는 것으로 평가의 실익은 미미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 신고
③ 예비분석모델	○ 예비분석표모델
판단 근거	○ 매년 발간되는 "농업법인조사 보고서(국가승인통계 제114049호)" 활용 가능
④ 대상 업종	○ 업종 특정 곤란
⑤ 예비분석내용	○ 2022년 국세청에 매출액을 신고한 25,119개 농업법인 중 95.4%(23,966개)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농업법인은 없고,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16개소에 불과 ○ 참고로, 2022년 기준 농업법인 26,104개 중 99.4%(25,950개)는 상시종사자 50인 미만으로 조사
⑥ 차등화적용 여부	○ 규제대상집단(농업법인)의 절대다수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대기업과의 규제차등화 적용은 불필요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 작성 생략(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규제차등화 적용의 실익이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동 규제는 가격·수량규제, 진입규제, 기준설정(환경 또는 안전기준) 등 전통적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음)

- 일몰설정 여부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으로서 농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농업법인에 대하여는 세제혜택과 함께 정부 보조금 지원, 농지취득 자격 등 다양한 지원 중
- 따라서, 농업·식품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는 일정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고,
 - 「농어업경영체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농업법인이 본연의 역할을 하고, 제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 존속 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 없음(아래표 참조)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 미적용 - 동 규제는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4제1항의 위임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는 곤란 *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등
유연한 분류 체계		○ 미적용 - 위 "포괄적 개념 정의" 참조
네거티브 리스트		○ 미적용 - 위 "포괄적 개념 정의" 참조
사후 평가관리		○ 미적용 - 동 규제는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에 따른 태양광 잉여발전 관련 요건을 규정한 사항으로써, - 사전 심의·검사 의무를 면제·완화하고 자율심의, 사후 평가·관리를 통한 (제품 등의)신속한 시장 출시 지원과 거리가 있음
규제 샌드박스		○ 미적용 - 「농어업경영체법」 위임 사항, 농업법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시행령에 규제샌드박스 조항 신설 곤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일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사조합법인" 제도와 농지법에 의한 "농지소유적격법인" 제도 운영
 - (농사조합법인) 농업인들이 구성하는 조합적 농업생산조직으로서 농가 경영을 보완하여 조직적으로 농업생산 활동을 하는 특수법인
 - (농지소유적격법인)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매출액의 50% 이상이 농업관련 사업에서 발생하는 "농사조합법인" 등이 설립할 수 있으며, 임원의 50% 이상이 농업에 상시 종사(150일 이상)하여야 함
- (프랑스) "공동농업경영법인"과 "유한책임농업법인" 제도 등을 운영중이며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농업정책 대상으로서의 위상과 관련
 - (공동농업경영법인) 농업인으로만 구성 가능하며, 참여자 모두는 법인의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개별영농은 불인정
 - (유한책임농업법인) 출자자 50%까지 비농업인의 참여를 허용하며, 최소 1인 이상은 영농종사자이어야 함(경영은 농업인만 가능)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일본, 프랑스 사례	일치	○ 불일치 사유 없음 － 해외 사례에서도 농업법인 제도의 도입취지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 출자자 등을 제한

○ 타법사례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100분의 30까지는 기부자에게 답례품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주민 복리 증진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 고유목적 사업의 예외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동 시행령은 이를 참고하여 개정

법령명	조문내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입장권 3. 자산가치가 높은 고가의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4.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 「수의사법」 제22조의3에서는 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되,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도록** 규정(농업법인 실태조사 시 사업범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이를 참조)

법령명	조문내용
수의사법	제22조의3(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① 동물진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동물병원에서 동물진료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동물진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동물진료나 수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2.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운영 3. 동물진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동물진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동물진료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동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장소 제한(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등) 외에 부대조건 추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4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장소 제한(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등) 외에 부대조건 추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동 규제는 현장에서 농업경영 이외에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 허용 지속적으로 건의함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써 피규제자의 규제 순응도는 높을 것으로 전망
- 또한,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건축물이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토지 이용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피규제자의 규제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실태조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농업법인이 동 규제를 준수하는지 점검이 가능(매년)

법령명	조문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실태조사) 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주기·방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원이나 주주의 인적 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2.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3.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 ② ~ ⑩ (생략)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매년 실시 2. 수시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의 목적, 기간, 및 대상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제출 요청 등을 통한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아울러,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에 따라 사업범위를 위반한 농업법인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여 행정적 집행도 가능

법령명	조문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해산명령) ①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1.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어업법인 5.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6.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동 규제는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별도의 재정 소요는 불필요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현장에서는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 허용 등 농업법인 사업범위 확대를 지속 건의(민생토론회, 국민신문고, 전화 등)
- 내부검토 및 연구용역* 결과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는 허용하되 전력매출액 설정 등 부대요건이 필요하다는 의견

* 농업법인 사업범위 분석 연구('24.11~'25.3월)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 허용을 포함하는 "농업·농촌 혁신 전략" 발표(경제관계장관회의, '24.12.)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내의견조회('25.2.26~3.10)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25.4.15~4.28)

2. 향후 평가계획

- 현장 및 전문가 의견에 따라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농업법인의 수익성 제고 및 안정적 사업영위 지원
- 이를 위해, 농업법인 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4049호)를 통해 농업법인의 경영성과를 '27년 이후 매년 5월경 지속 모니터링하고,
 -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매년 1회)를 통해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 관련 규제준수사항도 확인

법령명	조문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실태조사) 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주기·방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원이나 주주의 인적 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2.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3.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 ② ~ ⑩ (생략)

3. 규제 정비계획

○ 관련 고시 개정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농업법인 정관례	제3조 또는 제4조(사업)	농업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 추가	'25.12월

4. 종합결론

- 현장에서는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 허용 등 농업법인 사업범위 확대를 지속 건의(민생토론회, 국민신문고, 전화 등)
-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 허용 요건은 농업법인 제도의 목적 실현과 부작용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으로 판단되며,
 - 농업법인 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4049호)를 통해 농업법인의 경영성과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매년 1회)를 통해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 관련 규제준수 확인이 가능
- 이에 따라,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 허용을 통해 농업법인의 수익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 사업영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 규제에 따른 간접비용(기회비용)*에도 불구하고 직·간접 편익**이 커 규제의 실효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
 - * 태양광 발전시설 제한(발전시설은 농업법인 유휴부지에 설치, 총매출액의 30% 이하, 발전용량 1천kw 이하)에 따른 기회비용
 - ** 태양광 발전수익(육상태양광 300kw 기준 영업이익 25,293천원/연),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4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장소 제한(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등) 외에 부대조건 추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따른 설치비가 비용으로 발생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제한에 따른 수입 감소, 태양광 매출액 제한 등에 따라 농업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하여 기회비용은 일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하지만, 농업법인이 설치·운영 중인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 등에 관한 자료가 없어 정량적 분석에 어려움이 있음.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한국에너지공단) 발급현황 등을 활용한 비용·편익 분석을 검토하였으나 자료 미비로 분석 곤란- (편익1) 잉여전력 판매로 인해 태양광 판매 수익 증대에 따른 편익이 발생할 수 있음. 하지만, 태양광 발전설비 효율은 날씨 등 환경적 요인과 설비의 성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태양광 발전 용량별 수익에 관한 정부통계자료 미확보로 인해 정량적 분석에 어려움이 있음. - (편익2)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발전을 허용함에 따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 정책기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장소 제한(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등) 외에 부대조건 추가>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기 운영중인 농업법인 26천여개소(2022년 기준), 신규로 설립하고자 하는 농업법인(22년 기준 452개)
활동제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장소 제한(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등) 외에 부대조건 추가에 따른 설치 비용
비용항목	설비
비용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 정량평가 곤란()
근거설명	- 동 규제는 농업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업수행 여부 선택이 가능 - 태양광 발전설비에 따른 설치비가 비용으로 발생함. 하지만, 신규로 설립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중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피규제자로 산정하기 위한 현황 자료가 부족함. 또한, 기 운영 중인 농업법인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는 피규제자를 산정하기 위한 현황 자료가 미비함. - 따라서, 동 규제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함. - 아울러, 행정부담, 인건비 추가소요, 교육훈련 의무화에 따른 기회비용, 설비 또는 원재료의 추가 설치, 구입 등에 관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정량적 비용분석은 곤란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기 운영중인 농업법인 26천여개소(2022년 기준), 신규로 설립하고자 하는 농업법인(22년 기준 452개)
활동제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장소 제한(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등) 외에 부대조건 추가
비용항목	태양광 발전시설 제한(발전시설은 농업법인 유휴부지에 설치, 총매출액의 30% 이하, 발전용량 1천kw 이하)에 따른 수입 감소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농업법인이 설치·운영중인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 등에 관한 통계가 없어 수입감소 추정 곤란 ○ 다만, 동 규제는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를 신규로 허용하는 것으로서 기존에 설치·운영중인 농업법인의 행정부담 및 인건비의 증가, 설비의 추가 설치, 규제에 인한 각종 투입재 비용의 증가 등 직접비용 발생은 없는 것으로 판단

☐ 직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기 운영중인 농업법인 26천여개소(2022년 기준), 신규로 설립하고자 하는 농업법인(22년 기준 452개)
활동제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장소 제한(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등) 외에 부대조건 추가
편익항목	태양광 잉여전력 발전수익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태양광 발전설비 효율은 날씨 등 환경적 요인과 설비의 성능 등에 따라 달라 질수 있고, 태양광 발전 용량별 수익에 관한 정부통계를 확보하지 못해 직접편익 계산은 곤란 ○ 신규로 설립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중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피규제자로 산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함. 또한, 기 운영 중인 농업법인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는 피규제자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가 미비함. ○ 다만, 육상태양광 300kw 기준(20년 운영 기준) 운영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연 25,293천원으로 추정(농식품부 내부자료 인용)

☐ 간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기 운영중인 농업법인 26천여개소(2022년 기준), 신규로 설립하고자 하는 농업법인(22년 기준 452개)
활동제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장소 제한(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등) 외에 부대조건 추가
비용항목	태양광 발전시설 제한(발전시설은 농업법인 유희부지에 설치, 총매출액의 30% 이하, 발전용량 1천kw 이하)에 따른 기회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농업법인이 설치·운영중인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에 관한 통계는 없으나, - 태양광 매출액 제한 등에 따라 농업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하여 기회비용은 일부 발생할 전망 ○ 다만, '00년 이후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49,298개소) 중 81.6%는 설비용량 100kw 이하로 농업법인의 기회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 태양광 1,000kw 기준 설치비용은 20억원 내외로 추정('23~'24년 나라장터 입찰공고 사례 참고)되는 점도 감안할 필요
--	--

□ 간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기 운영중인 농업법인 26천여개소(2022년 기준), 신규로 설립하고자 하는 농업법인(22년 기준 452개)
활동제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장소 제한(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등) 외에 부대조건 추가
편익항목	재생에너지 보급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24.5월)"에 따르면 2030년까지 46,500MW의 발전설비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3년까지 28,033MW 보급 완료* * 출처 :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조사(한국에너지공단) ○ 이에 따라,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판매를 허용함에 따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